



제 439회 국회 (정 기 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 재정전망에 주요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포함〉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95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기 재정전망에 주요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포함 (안 제7조제4항)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1.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 조세,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장기 재정전망에 주요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포함 (안 제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재정전망 실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장기 재정전망 실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u>있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u>하여야 함.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6개 연금 및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¹⁾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 재정위험을 진단하는 것으로,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²⁾

최근의 장기 재정전망은 2025년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으로, 이에 따르면 인구·거시경제 전제에 따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33.0%~173.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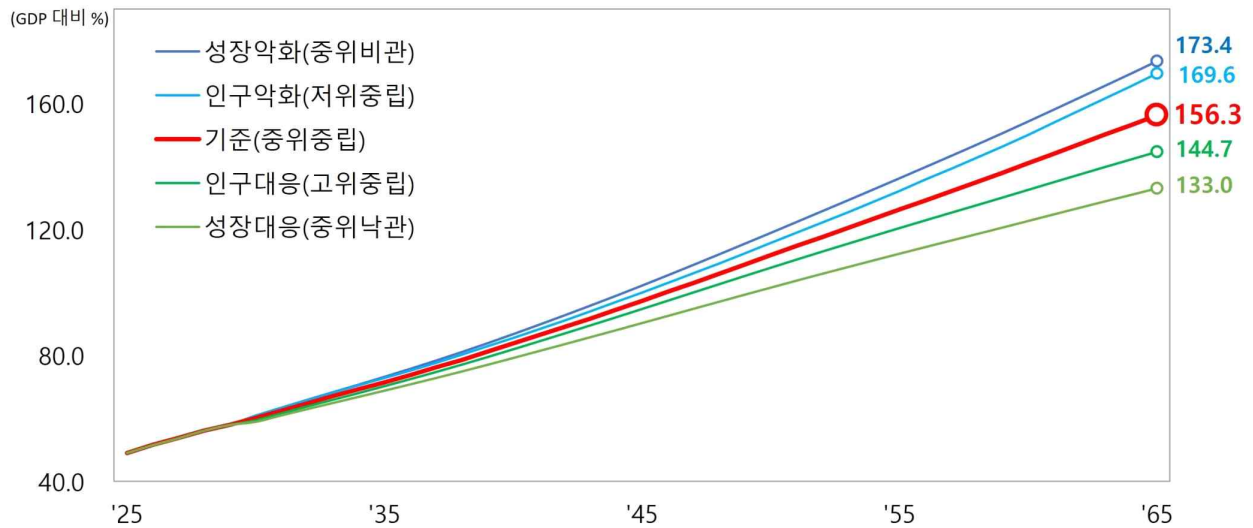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실시」, 2025. 9.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실시」, 2025. 9.

특히 8대 사회보험³⁾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사회보험 지출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음.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적자 전환 시점	고갈 시기	GDP 대비 재정수지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
국민연금	'48년	'64년	2.46	2.54	0.56	△1.90	△5.11
공무원연금	적자 지속		△0.33	△0.37	△0.46	△0.56	△0.69
사학연금	'26년	'47년	0.00	△0.03	△0.04	△0.03	△0.05
군인연금	적자 지속		△0.08	△0.09	△0.11	△0.13	△0.15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자 전환 시점	고갈 시기	GDP 대비 재정수지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
건강보험	'26년	'33년	0.01	△0.52	△1.58	△2.33	△2.99
노인장기 요양보험	'26년	'30년	0.01	△0.25	△0.82	△1.39	△1.72
고용보험	흑자 유지		0.00	0.03	0.06	0.12	0.18
산재보험	흑자 유지		0.04	0.07	0.11	0.17	0.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 9.

이처럼 정부는 사회보험이 미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항목으로서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계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과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국가가 장래에 연금·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례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GDP 대비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비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수입·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채원조달 방식과 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등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를 장기 재정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

금·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금·사회보험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문언상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의무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이 아니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도 포함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⁴⁾ 본문은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단서에서는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단서에 따라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미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상치에 불과한 우발부채 및 국가부담비용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국가부담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장기 재정전망과 별도로 8개 연금 또는 사회보험⁵⁾에 대해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919호)이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 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 ----- ----- ----- ----- ----- ---있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 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신 설>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
<신 설>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
<신 설>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신 설>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신 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152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1.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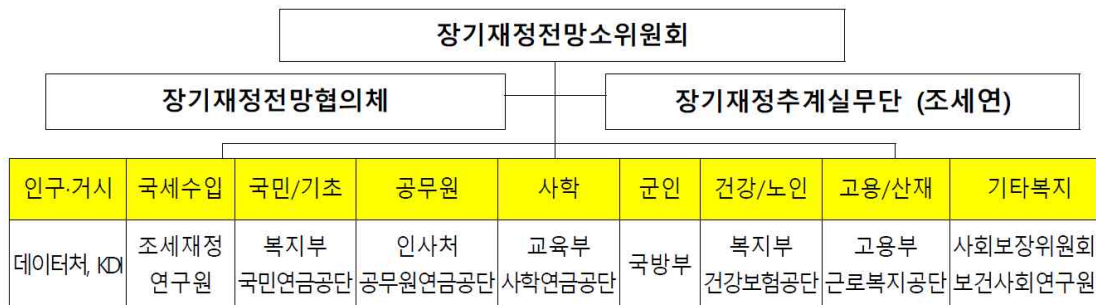
-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제7조③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④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제7조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3. 전망방법

- 정부 차원의 통합된 전망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동일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적용하여 전망

<장기재정전망 전망개요>

1 전망 전제	2 항목별 전망	3 총량 전망
① 공통 전제: 인구, 거시경제 변수 (성장률, 물가, 이자율, 임금 등) ② 분야별 주요전제: 사회보험 보험요율 등	① 총수입: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수입 ②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① 재정수지: 통합· 관리 재정수지 ② 국가채무(D1)

< 데이터처 / KDI / 관계기관 >

< 조세연 / 관계기관 >

< 조세연 >

자료: 기획예산처